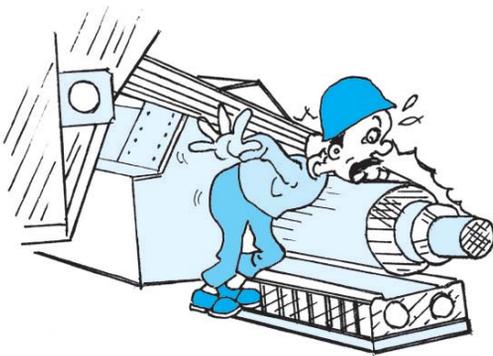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11월 ○일 23 50분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철강(주)Slitter 공정에서 코일(약 3톤)을 Slitter 기 작업중 피재자가 권취기(Recoiler)에 감기는 철판 아래에서 손으로 철판을 점검하던 중 손과 몸통이 Recoiler에 감긴 것을 동료작업자가 발견,기계를 정지시키고 피재자를 구조·후송하였으나,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운전중인기계설비에 접근
- 나.방호울등미설치
- 다.비상정지장치미설치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운전중인 기계설비(Recoiler)에 이물질 등 제거작업시 운전정지
 운전중인 Recoiler 등에 이물질 제거작업시에는 반드시기계운전을정지하여야함.

나.Recoiler 부에 접근방지를 위한 방호울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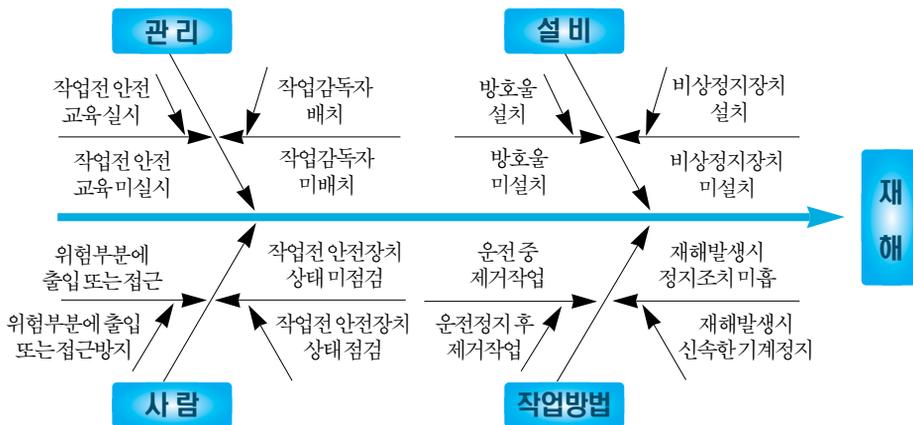
회전하는Recoiler에 말릴 위험이있는부분에의출입 또는 접근방지를 위하여 방호울을 설치하여 근로자의출입또는접근을방지하도록함.

다.Recoiler 부 비상정지장치 설치

Recoiler에 접근시 협착등의 재해가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자가 즉시 Slitter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소에 비상정지장치(손조작 로프식)를 설치하도록 함.

5.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업 작 사 고 II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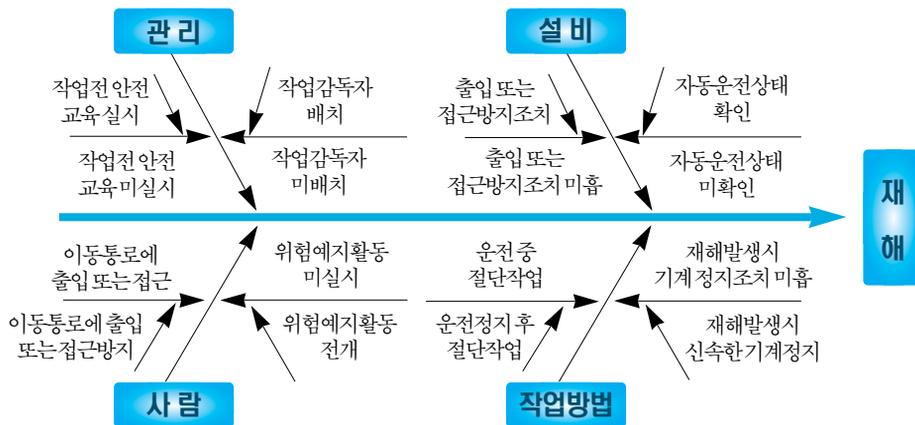
2003년 12월 ○일 05:18분경 경북포항시소재 ○제철소 시편채취라인 결속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열연코일 결속작업중 전 공정에서 수동절단한 임시밴드가 코일하부에 끼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단·제거하기 위해 자동운전중인 코일이송용 대차 이동통로 내로 들어가 밴드 절단작업중 재해자 뒤쪽에서 자동 진입하던 코일 이송용 대차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나.작업 감독자 미배치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공작기계·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켜야 함.

나.작업감독자 배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에 따라 지휘·감독 실시

다.위험예지훈련 생활화

안전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사고로 항상 위험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험예지훈련 실시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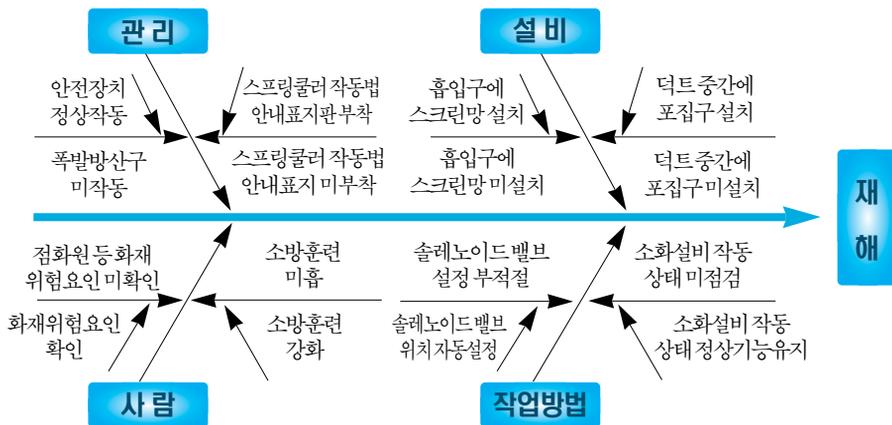
2003년 11월 ○일 14:25분경 인천광역시 소재 ○○ 약기제조(주)내 집진기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화재진화 마무리 작업중 집진기 상부 점검구가 과열되어 화염이 비산되면서 집진기 맞은편 작업자 10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점화원 관리 미흡(추정)
- 나. 소화설비(스프링쿨러 시스템)미가동
- 다. 폭발방산구미작동 및 설계 부적절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자동으로 설정 비상시 집진기 가동 중단과 함께 Air Pulse를 차단 할 수 있도록 기설치된 공압용 솔레노이드 밸브의 위치를 자동으로 설정

나. 국소배기장치 흡입구에 스크린망 설치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흡입구 진 입부분(댐퍼 부근)에 스크린망 설치

다. 덕트 중간에 이물질 포집구 설치 이물질 등이 집진기 내로 이송되지 않도록 주덕트와 집진기 입구 사이에 포집구 설치

라. 소화설비 관리 및 작동 철저 스프링쿨러 시스템 항상 정상기능 유지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와 상 사 고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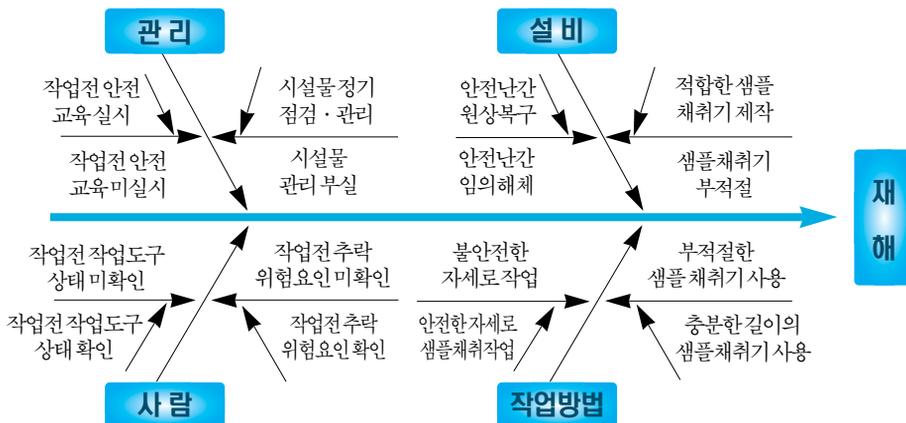
2003년 11월 ○일 01:30분경 인천시 소재 (주)○○의 도금6호기에서 생산○부 소속 산세작업 피재자가 산처리 작업중 회황산의 온도 및 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샘플채취도구를 이용하여 황산을 채취하던 중 산처리조에 추락하여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안전난간 임의 해체후 작업
- 나. 부적절한 작업도구 사용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안전난간 임의 해체후 작업금지
 기설치된 안전난간을 작업자 임의로 해체한 후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세척 등 다른 작업을 위해 해체하였다더라도 작업후 반드시 원상복구토록 관리함.

나. 적절한 작업도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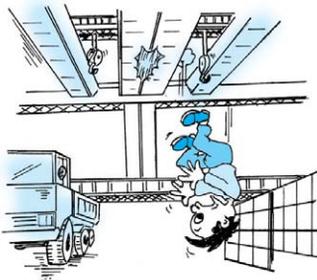
기존에 사용중인 샘플채취기(길이 75cm)는 너무 짧아서 채취작업시 불안정한 자세를 유발하고, 재질이 철사로 되어 있어 부식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금지토록 하고, 충분한 길이(150cm이상)의 샘플채취기를 제작하여 사용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11월 ○일 15시 30분경 부산시 소재 ○○ Steel(주)강재 압연공장에서 천장크레인(정격하중 : 7.5ton) 2호기 운전공인 피재자가 천장크레인 2호기 WalkWay에 설치된 주행모터 체인커플링 점검작업 중 동일레일에 설치된 1호기 천장크레인(정격하중 : 7.5ton)의 운전으로 충돌되어 그 충격으로 약 5.45m 아래 철근절단기 상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병렬설치 크레인의 수리작업시 안전조치 미 실시
- 나. 병렬설치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부적합
- 다. 추락방지용 안전대 미착용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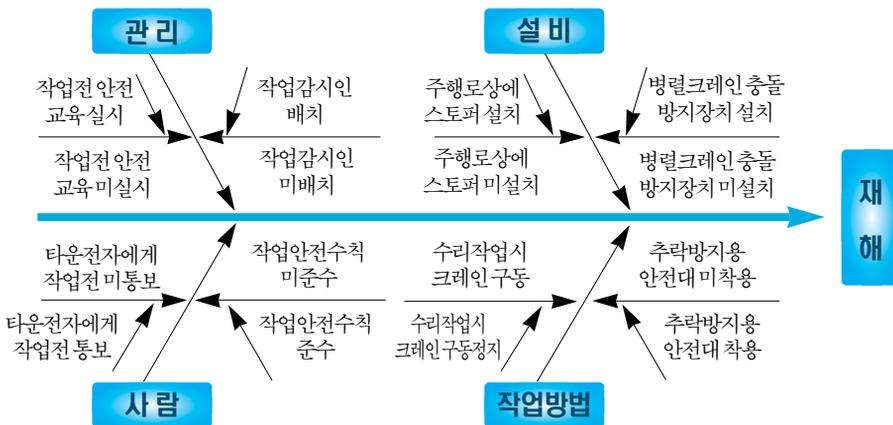
가. 병렬설치 크레인의 수리작업 안전조치 철저
 동일한 주행로에 병렬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의 수리작업을 할 때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주행로 상에 스톱퍼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철저

나. 병렬설치 크레인에는 규정에 적합한 충돌방지장치 설치
 동일한 주행로에 병렬 설치된 크레인이 설정된 거리 이내로 접근할 때 자동으로 경보와 함께 정지되는 방식의 충돌방지장치 설치

다. 추락방지용 안전대 착용
 높이 10m의 크레인 거더(Girder) 상부에서 작업시에는 추락방지용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추락 사고 II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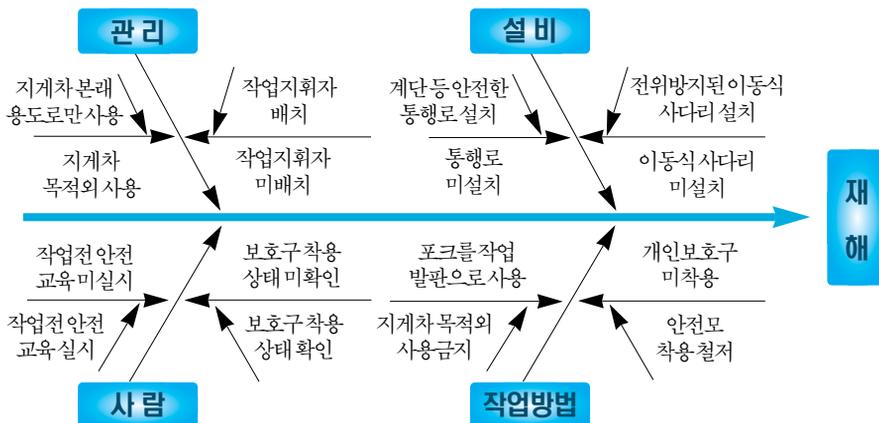
2003년 11월 ○일 10:15분경 용접반내에서 작업장 바닥에 널려있던 전선케이블을 2층 창고에 올려놓기 위해 지게차에 케이블을 적재한 후 포크를 올려놓고 포크부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지게차의 목적외 사용
- 나. 안전모 미착용
- 다. 안전한 통행로 미설치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통행로 설치

높은 장소로 근로자가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한 계단 등을 설치·이용하여야 하며, 통로가 없을 경우에는 전위방지조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한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야 함.

나. 지게차 목적외 사용 금지

지게차는 중량물 이송·적재에만 사용하고 고소부 작업시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등 목적외 사용 금지

다. 안전모 착용

고소작업시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착용시 머리로부터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반드시 조여야 함. 또한 관리감독자는 안전모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